

예 산 총 칙

제 1 조 2013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 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총 계	4,315,062,928	129,451,887
일 반 회 계	3,831,237,539	114,937,126
특 별 회 계	483,825,389	14,514,761
공기업특별회계(지역개발기금)	237,534,000	7,126,020
기 타 특 별 회 계	246,291,389	7,388,741
· 강원도립대학운영	10,179,754	305,392
· 의료급여기금운영	221,468,000	6,644,040
· 학교용지부담금	14,643,635	439,309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(채무부담행위사업) : "해당없음"

제 4 조 (계속비사업) : "해당없음"

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"명시이월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0,812,548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41,5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8 조 다음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아래 비목 상호간 또는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.

- (1) 공무원 총액인건비
- (2) 차입금 원리금상환
- (3) 공공요금, 제세공과금, 배상금, 법정전출금
- (4) 재해대책 및 복구비